

◆ 대한비과학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시행세칙

2013년 7월 14일 제정

제1조(전자우편 발송) ① 전자우편 발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당해 행사계획서를 구비하여 발송예정 7일 전까지 본 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전자우편 발송 승인 및 승인 취소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에 준하여 결정한다.

③ 전자우편 발송은 신청건당 3 회 이내로 제한한다.

④ 전자우편 발송을 신청한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전자우편발송 내용, 세부 행사 내용, 행사 결과 및 행사에 따른 특이 사항을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

⑤ 전자우편 발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발송을 신청한 단체에서 부담한다.

제2조(학회 홈페이지 광고) ① 본 학회 홈페이지의 광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광고 사용 신청서(별지 제 1 호 서식), 당해 행사계획서, 필요한 경우 단체현황 및 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사본 등을 구비하여 행사예정일 30 일 전까지 본 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본 학회 홈페이지의 광고 사용 승인 및 승인 취소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에 준하여 결정한다.

③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면 배너는 5개 이하로 한다.

④ 게시기간은 최초 게시일로부터 2 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호 범위 내에서 게시기간을 연장 할 수 있고, 승인 기간이 경과한 팝업과 배너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삭제한다.

⑤ 홈페이지의 광고를 신청한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세부 행사내용, 행사 결과 및 행사에 따른 특이 사항을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

⑥ 본 학회 홈페이지의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을 신청한 단체에서 부담한다.